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

대한민국 (1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대유행이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영향을 주었으나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 증가,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11명 식별 및 서비스 제공, 선원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식별 지침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국회는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21년 3월 제정하였다. 추후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법률은 국제사회가 정의한 인신매매의 개념에 근접하게 “인신매매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다. 정부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당국이 식별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를 집계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소된 대다수의 인신매매범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공무원들은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처벌하거나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및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방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비정부 기구들은 처벌 관련 조항의 부재로 3월에 제정된 새 법률이 인신매매범 처벌 노력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 하였다.

우선 권고사항: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을 증가시켜야 한다. •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선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해야 한다. • 2000년 유엔 인신매매 방지(TIP) 의정서에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도록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하는 등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 포괄적인 인신매매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인신매매범, 특히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 사건의 경우 경찰과 출입국 본부 간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범 대다수에게 1년 이상의 장기 복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 집행 담당관들에게 외상 인식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수립, 이행해야 한다. • 법 집행 담당관, 검찰, 사법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신매매를 국제법상에 정의된 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위험 선박이 귀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해상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 축소, 어선들의 노동환경을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구축 등,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실시 및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남성, 아동,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등 기타 범죄와 구분하는 인신매매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여권 등 노동자의 신분증명서를 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해야 한다. • 한국 및 노동자의 모국에서 채용담당자가 채용 및 고용 관련 수수료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노동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노력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이러한 부분은 수산업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형법 제31장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성폭행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해당한다.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 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289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아동 성적 인신매매를 피해자의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다. 그러나, 동법의 다른 여러 조항이 그러한 이동이 없었던 아동 성적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인신매매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정의한 포괄적 법률이 없다 보니 법 집행기관과 검찰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상이하였다. 정부 공무원들이 인신매매의 성립에는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상업적 성매매, 약취, 가정폭력, 그 외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 관련 범죄와 합쳐서 다루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21년 3월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은 국제사회가 정의한 인신매매의 개념에 근접하게 “인신매매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으나 처벌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담당자들이 현존하는 법률체계의 다양한 법규를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사 관련 법령은 기존의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처벌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다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 및 인신매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신매매범 처벌에 현존하는 법률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관련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새 법률의 제정이 결과적으로 인신매매범 기소 및 처벌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형법상 모든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일반 통계를 내고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를 상업적 성매매나 약취와 같은 관련 범죄와 충분히 구분 짓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보고한 법 집행 통계에서 국제법이 정의하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수사한 인신매매 범죄 건수 (2019년 13건)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133명을 기소하였으며 (2019년 90명) 인신매매범 5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2019년 77명), 28명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2019년 30명) 했다고 밝혔다. 2019년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인신매매범들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전체적인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저하 및 악화되었다. 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1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제한 후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업로드 및 판매하여 법원으로부터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공범들 또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대다수의 인신매매 범들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인신매매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인신매매를 저지른 경우도 일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COVID-19 대유행 전,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일부 제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나 기소는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한국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신매매 4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하였으나, 근해 및 원양어업 선단에서 선원 이주노동자가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노동 인신매매 관련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정부 기구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는 어선들에 대한 충분한, 혹은 잦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 등으로 착취하는 선장 및 그 외의 인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최소한의 규정만을 준수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산업 관련 인신매매 수사 노력은 대부분 통보 후 방문하여 선원들이 솔직하게 대화하기 어려운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여 비효율적이었다. 선원법 제167조 3항은 선박에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 국적 어선을 인신매매로 처벌한 기록은 보고된 바 없다. 또한 비정부 기구들의 광범위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타 산업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및 착취와 관련하여 기소한 사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와 협력 중인 비정부 기구들에 의하면 출입국 담당관 및 근로감독관들은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 부족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노동 인신매매 사건들을 행정 위반 건으로 처리했다.

한국 경찰청은 2020년 5개의 경찰 훈련에 인신매매 근절 교육, 경찰 학교에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수업을 추가하고 모든 경찰서 직원들이 매년 1회의 성적 인신매매 근절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 집행 담당관들이 받은 교육에서는 노동 인신매매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 일부 관리들은 특히 채무를 빌미로 한 강압 행위가 있는 사건의 경우 노동 인신매매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법 집행 당국이 제공하는 훈련이 인신매매 근절 노력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경찰, 검찰,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통역사들은 피

해자와 면담 시 외상 인식 접근을 하지 않아 인신매매범을 기소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효율적으로 수집하지 못하였다. 법 집행 당국은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일부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건을 인신매매범의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기소를 취하하였다. 과거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정부가 채무를 빌미로 한 강압 행위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본국에서 이뤄진 채용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인식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장기 또는 영구 거주에 대한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신매매범 수사에 증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혹은 유죄판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된 부패행위 및 공무원에 대한 일부 제보가 있었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보호 및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방지 노력은 부족했다.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집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 노력 중 일부는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선 경찰, 검찰 및 해안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배포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정식 지원 절차가 부족했다. 여성가족부 또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부 담당관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였으나 법 집행 당국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식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 식별에 실패하였고 상당수의 담당관들이 식별 절차를 적절히 도입하지 않았다. 한 비정부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식별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및 그 외 법 집행 담당관들은 해당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들은 실태 점검 시 피해자 식별 지침을 활용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을 수사관들에게 교육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2020년 기준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262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들에게 강제 근로 금지 등의 노동법 관련 연례 교육을 제공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홍등가’ 지역에서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활동을 벌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몇 명 식별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법 집행 당국은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를 여성가족부가 운영 혹은 출자한 지원시설에 인계하였으나 그 가운데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6,924 명, 2020년 6,743명에게 자체 지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지적 장애가 있는 3인을 포함한 4명의 한국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 인신매매 착취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단 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인신매매로 착취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 기간 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착취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본국 송환을 지원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 당국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담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에 인계하는 데 지침이 되는 공식 인계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피해자 확인 즉시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외상의 재발을 초래했다. 경찰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무지하여 비정부기구들에게 인신매매 관련 정부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내 태국 국적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협력 중인 태국의 한 비정부 기구는 본국 송환 전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수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착취 피해 근로자들이 정부 핫라인이나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에 연락했을 때 일부 직원들은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로 연계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2020년 설립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35명의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증 발급 담당관들에게 인신매매 식별 훈련을 제공하였다. 법무부는 2020년 1월부터 수립된, 예술홍행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를 갱신할 때 성적 인신매매 식별 설문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이같은 조치가 피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추방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설문을 통해 착취 사실을 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으며, 출입국 담당관이 해당 비자 소지자의 인신매매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련 대응 지침을 정부가 설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96개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이들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쉼터,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지만, 정부는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특히 남성, 장애인, 외국인, 그리고 아동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관련 지원이 일관성 없이 제공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 집행 당국의 수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상담, 의료·법률 및 그 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는 그러한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발급해 주어 최장 1년간 한국에 체류하고 일하면서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인된 피해자를 기록하지 않아 G-1 비자를 발급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외국인 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한해 지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해도 관련 불이익이 면제되며 해당 보고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가 이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나 이중 몇 명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이 곤란에 처하거나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당국은 빈번하게 외국인 피해자를 구금 혹은 송환하였다.

비정부 기구들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잘못 식별하고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도중 정부가 일부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금했고 수사 종료 뒤 이들을 송환했다. 추

가로 보고 기간 중에 경찰이 최소 한 명 이상의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체포하였으나 인신매매 식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신매매법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신문 후 처벌하였다. 경찰청,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자진 신고한 피해자를 포함해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추방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수사 기관과 출입국 당국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경찰청은 착취 사실을 자진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 체류 자격은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방침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동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임의적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 간 포괄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관련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경찰청이 인신매매 관련 동향을 출입국 당국과 공유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일부 경찰들은 인신매매법의 강요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경찰청 정책 상 구금 및 추방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정부 기구에 의하면 48시간 이내 출입국 당국에 피해자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성적 인신매매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흥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 중 경찰은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식별 지침을 활용하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인신매매법 대신 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지하며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조율했다. 2020년 3월 설립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에 관련 의견을 요청하였고, 2021년 3월 국회가 해당 법안을 제정하였다.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본 법안은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의 설립, 5년 단위의 종합 계획 수립과 18곳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여러 계획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의 부재 및 “인신매매 등”의 표현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이해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폭넓게 비판하였다. 정부는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 캠페인으로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해안경찰청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들을 배포하였지만 정부는 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부 비정부 기구들이 보고한 효율적인, 혹은 광범위한 인신매매 근절 교육 캠페인의 부재가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 수준에 기여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재외 한국 외교공관과 한국인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나라들에 위치한 인신매매 방지기관에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를 계속해서 배포했다. 상업적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은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성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공항 등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불법성을 알렸다. 정부는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 신고용 핫라인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13개국 언어로 운영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위한 2곳의 콜 센터를 운영하였다. 핫라인은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그리고 버마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곳의 콜 센터는 2020년 한해 동안 각각 31건과 2건의 상담을 인계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도착 전과 후를 기준으로 근로,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 및 성적 학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356명의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용주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44곳의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역,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정부 기구들은 정부가 비양심적인 채용 업체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하여 착취에 더 취약해졌으나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착취 혹은 위반 사례를 보고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으며 직장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근로자들은 착취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증명하기 위해 수개월을 소요하였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착취한 고용주들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 혹은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고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증 발급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35명의 관련 담당관들에게 인신매매의 정의 및 지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수산업 및 그 외 고용 허가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근무했으나 COVID-19 대유행 관련 이동 제한으로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일부 이주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근로 관련 법들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을 강제노동 등으로 착취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선원법에 의해 한국인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규정된 법적 근로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로 수당 및 유급 휴일 등이 면제되었다. 선원법은 해양수산부가 (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선원들의 최저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연례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한국인 선원만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을 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 원양산업 노동조합을 포함한 고용 및 어업 단체들이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한 비정부 기구에 의하면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한국인 선원 대비 1/10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휴일 혹은 초과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기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어선들이 항구로 귀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정부 기구들에 의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구로 귀환할 필요가 없는 많은 선박들이 한 번에 1년 이상의 기간을 해상에서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관련 법률은 또한 착취성 임금 공제 혹은 노동자에게 고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아 인신매매범들이 부채에 기반한 강압행위를 통해 선원 이주노동자들 및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착취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들 및 노동조합들과 협력하여 선원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2개의 지침 및 조치를 수립하고 2020년 6월 및 12월에 발표하였다. 이 지침들은 임금 지급 관련 투명성을 향상하고 송출국의 채용 업체들의 규정을 개선하며 표준 근로 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 및 휴대 가능한 식수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비정부기구 소속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새로 발표된 지침들은 영구적이거나 법률로 성문화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당사자가 관련 서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비정부

기구에 의해 정부 소속 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된 수산업 협동조합이 이주노동자 고용 절차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정부기구들은 과거 수산업 협동조합과 유사한 협의가 있었으나 비양심적인 관행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며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가 착취성 채용 절차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그 외에도 표준 근로 계약서 관련 조항이 이미 선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점,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 관련 조치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는 조항을 위반하는 점, 유연성 있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최저 수준의 연속 휴식 시간이 제공될 수 있는 점, 관련 조치들이 (선주사가 지불하도록 명시한) 고용 수수료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다른 전문 용어를 사용해 노동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선박들이 최장 15개월 연속으로 해상에 머무를 수 있게 허용한 점 등이 비정부기구들에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정기적인 감독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가 2020년 5월 및 6월에 어업 종사자 및 그 외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103명의 선주, 선장, 양식장 운영자 및 그 외 관련 인물들을 체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7,137곳의 업무 현장과 493곳의 거주시설을 검사하여 적절한 생활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불충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 착취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검사 일정을 자주 사전 통보하여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인신매매 관련 지표를 은닉하고 검사 전 피해자들에게 면담 관련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성행위를 상업화한 국제결혼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 지자체가 한국 농민들이 중개인을 통해 외국 여성과 결혼하도록 장려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해당 여성들 중 일부는 성적 인신매매와 가사 노예로 착취당했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

을 착취하는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한국 여성과 아동을 주점,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업소 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를 이용해 성매매로 착취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그리고 성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할 용도로 스마트폰과 채팅 앱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한국인 여성 및 아동을 모집하고 포르노 영상 제작 참여에 강요하기 위해서 노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인신매매범들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주로 부채에 기반한 강압행위를 통해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로 한국 여성들을 착취하고, 주로 중국,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 및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성적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소유주 혹은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성적 인신매매범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인 E6-2 호텔·유흥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 여성들을 향만과 미군부대에 근접한 “외국인 전용” 주점을 포함해서 술집과 클럽에서 착취했으나,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군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클럽은 2020년 초부터 문을 닫았다. 고용 중개인, 비양심적인 채용업체, 그리고 주점 및 클럽 운영자 혹은 점주들은 가수 혹은 공연자로 채용한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장시간 술과 음료를 팔며 클럽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압한다. 안마시술소 고용인 및 점주들은 한국 내 전문 안마사로 채용한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때때로 여권 압수, 물리적 폭력, 국외 추방 및 폭력을 이용한 협박 등을 통해 고용된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학대 및 언어·물리적 폭력에 직면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급여 지급이 보류된다. 일부 주점 운영자들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공장이나 다른 업종에서 단기 채용한다는 허위 약속을 받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인신매매범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클럽 근무와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 COVID-19 대유행 관련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인하여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모집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일부 여성들은 한국 도착 후 성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일부 한국 남성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인신매매범들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격리 요건들로 인해 일부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여성 이주자들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였다. 유흥업계의 손실이 증가하자 일부 인신매매범들은 폭력 및 그 외 착취 방식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일부 중개인들은 COVID-19 대유행 이전 클럽에서 근무하던 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인신매매범들은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가 있는 일부 한국 남성들이 어선, 염전, 양식장 및 목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비양심적인 근로자 고용업체들은 때로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과해 부채에 기반한 강압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일조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약 200,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및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해당 업종들에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고용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불법체류 및 합법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준하는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종사 중인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온실, 선적 컨테이너, 기숙사 등 미흡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요받는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외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세계 최대 규모 원양어업 선단 중 하나인 한국의 어업 선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다. 채용 업체, 선주, 선장 및 고용 중개인들은 부채에 기반한 강압행위를 자주 사용하여 한국 국적 혹은 한국 소유의 선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 등으로 착취한다. 보고에 의하면 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약 4,000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선박들에 고용되어 있다. 한국의 원양어선들은 포획한 어류를 빈번하게 해상 전재하여 귀항하지 않고 1년 혹은 그 이상을 해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잦아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안전하

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25개의 세계 최대 규모 주낙 어업 선단 중 한국의 주낙 어선들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고, 매일 가장 긴 시간 동안 어업에 종사하며, 가장 오랜 시간을 해상에서 보낸다고 한다. 채용 업체 및 고용 중개인들은 연안 선박에 고용되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선원에게 때때로 최대 \$13,00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선원들에게 자주 과도한 고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부채에 기반한 강압행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보증금”으로 보류당해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선원들은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휴식 및 휴일이 제한되며 선장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며 급여 공제 및 충분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및 근무한다. 고용업체 및 선장이 연안 및 원양어선 선원의 여권을 보관하여 고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정부 관리들이 종종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에 공모했음을 암시하는 일부 제보가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처벌·추방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자 일부 법 집행 당국들과의 관계를 활용했다. 보고된 한 사건에 의하면 고용주가 불시 단속 혹은 출입국 검사에 앞서 부패한 경찰 및 출입국 담당관들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경찰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일부 개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